

<개정 2025. 8. 7.>

[] 제조 화학물질 [] 등록 면제확인 [] 신청서
[] 수입 [] 신고 [] 변경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	------

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신청사항	화학물질명 (총칭명)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① 상품명
	② 용도		③ 수입(수출)국
	자료보호신청 여부	[] 해당 [] 해당없음	
	④ 연간제조(수입) 예정량(톤)		⑤ 금회 제조(수입)량(톤)
	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		
	⑦ 화학물질의 분류		

변경신청 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
수입자 (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자인 경우)	⑧ 상호(명칭)	⑨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⑩ 대표자	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⑫ 수입국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

⑬ 수탁자 (신청인이 위탁한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[]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7조제1항
위와 같이 [] 제조 화학물질의 [] 등록 면제 확인을 [] 신청 [] 제7조제2항 제2항
[] 수입 [] 신고 [] 변경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의 경우 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나.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. 1)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: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2)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: 자료보호신청서 3)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: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	등록면제 확인 수수료 50,000원 (중기업은 25,000원, 소기업은 10,000원)
	2. 변경신청의 경우 가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다. 화학물질 등록·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)	신고면제 확인 수수료 30,000원 (중기업은 15,000원, 소기업은 6,000원)
담당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.
-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(수출)국을 적습니다.
-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.
- ⑤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·수입량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.
- ⑦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.
- ⑧란 ~ ⑩란은 신청자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,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⑪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10.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